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2. 1 선고 2021가단2833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

담당변호사 이예슬, 최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6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.

주 문

1. 피고와 망 C(D생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9. 2. 20.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4,980,0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,980,0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1. 10. 망 C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에게 6,500,000원을 대출만기일 2021. 1.

10.까지, 약정이율 연 14.5%, 연체이율 연 17.5%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2021. 10. 15. 기준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6,776,747원에 이른다.

나.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9. 2. 20.경 보험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하였다.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4,980,059원이다.

다. 위 계약자명의 변경 당시 망인은 상주시 E 답 849㎡를 소유하고 있었는데, 위 토지는 2020. 2. 7. 피고에게 매매대금 16,000,000원으로 매도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그밖에 망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, 반면에 채무로는 원고에 대한 위 6,500,000원의 대여금채무 외에 F조합에 대한 10,000,000원의 대출금채무와 위 토지에 G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0,000,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가 있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이 법원의 H,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는데, 이는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고 등 망인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또한 망인은 사해행위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자신이 망인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생존해 있을 때 피고의 아버지인 I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게 되었고 변경 후부터 현재까지 40여 개월 동안 피고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망인과 피고의 관계, 망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경위, 망인의 사망 시기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

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성창호

별지

목록

순번	증권번호	현재 보험계약자	계약일	계약자변경일	총지급금	상품명
1	J	B	2007. 6. 8.	2019. 2. 20.	4,013,742	K
2	L	B	2010. 3. 22.	2019. 2. 20.	966,317	M

